

**KCOPA**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온라인보호부

**2022**



#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REPORT

저작권 침해 이슈리포트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광고 게재 실태 및 광고차단 사례 조사

## I. 저작권 침해 사이트 현황과 환경변화

### 1. 저작권 침해 사이트 현황

온라인을 통한 자료공유가 대중화되고 다양한 온라인 공유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영화, 방송, 음악 등의 불법복제물 유통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는 P2P(Peer to Peer)<sup>1)</sup> 방식의 토렌트 사이트와 영화와 방송 등의 영상 저작물을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재생하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sup>2)</sup>, 여러 웹툰 플랫폼의 웹툰을 한 대모와 제공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이 있다.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밤토끼를 비롯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가 적발되고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지속해서 불법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권리자의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조사한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토렌트 사이트 64건,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185건, 불법 웹툰 사이트는 54건으로 나타났다. 서버 위치별 사이트 수는 국내 35건, 해외 268건로 확인되었다.

●●● [표]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국내외(서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수

(단위: 건)

구분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웹툰	합계
국내	4	30	1	35
해외	60	155	53	268
합계	64	185	54	303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다수는 국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이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K-콘텐츠의 대표주자로 성장하고 있는 웹툰 산업의 경우 불법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0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잠재 피해 규모는 합법적 시장 규모 10배 이상인 약 6조 6,6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저작권 침해 사이트 환경변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물건을 유통하는 것을 뜻하는 속칭 ‘어둠의 경로’라 불리며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형태와 통용 방법도 점차 변화하였다. 1980대부터 1990년대 초는 국내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으로 비디오테이프나 플로피 디스크, CD 등을 통해 영상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을 복제해 세운상가나 용산전자상가 등 노점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나 만화를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면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경과를 초래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비디오테이프 시청 전에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당시 해외에서

1)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교환·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2) 단순 링크, 직접 링크, 프레임 링크, 임베디드 링크 등의 방식을 통해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클릭만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하는 방식

개봉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국내에서는 상영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운상가 등 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방송된 영화를 녹화하여 무단으로 번역하여 판매하는 불법 복제가 성행하였다. 음악 역시 사람이 번잡한 변화가에서 리어카에 불법 복제 된 오디오 테이프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다.

●●● [그림] 과거 불법복제에 대한 경고문구(좌), 불법복제 음악 테이프 판매 노점(우)



1990년대 후반 PC통신 환경이 구축되면서 사실 BBS<sup>3)</sup>를 통한 개인간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온라인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 정부의 PC 보급 정책으로 가정의 PC 보급률이 높아지고 초고속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불법복제물 유통환경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당시 ADSL 기반의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던 메가패스, 하나포스 등 통신사의 대용량 자료실<sup>4)</sup>에는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불법으로 공유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P2P 기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프루나와 같은 P2P 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로 이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음악 MP3 파일을 공유하던 ‘소리바다’와 영화나 게임 등을 공유한 ‘당나귀’가 있다. 2000년대 후반 P2P 서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간편하고 빠르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하드가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자리를 잡게 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중계 서버가 필요하다는 기존 P2P의 단점을 해결한 다수 이용자가 서로 파일을 조각 단위로 구성하는 식으로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 역시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속 회피를 위해 소규모 카페나 밴드, 블로그,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복제물 공유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스마트폰 기기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링크 방식의 사이트도 지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웹툰 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플랫폼 사의 웹툰 콘텐츠를 모아 불법으로 제공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도 꾸준히 성행하고 있다.

## II.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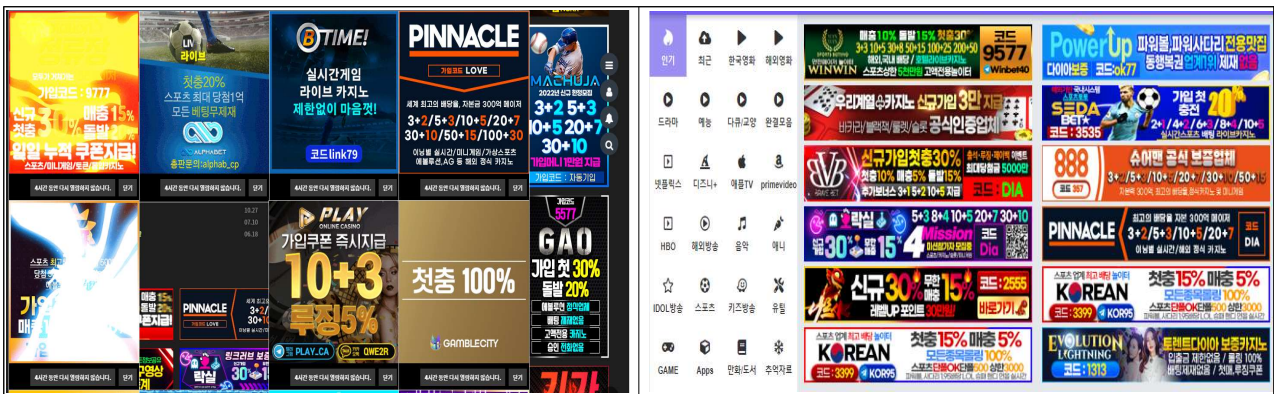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부분은 유료로 운영되는 합법 플랫폼과 달리 무료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게재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바이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처지에서는 무료로 저작물을 유통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통한 경제적 수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는 단속의 위험을 감수

3) 전자게시판. PC 통신에서 불특정 다수 사용자가 컴퓨터를 통해 정보와 편지를 교환하고 대화하거나 비상업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4) 당시 통신사 대용량 자료실은 회원들이 일정한 금액을 통신사에 지급하여 자료 업로드 용량을 확보,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업로드 용량을 모아 불법복제물을 유통하였다.



하면서 까지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것일까.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내 광고 게재를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접속하여 이용한 이들은 사이트에 접속하면 배너나 팝업 형식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광고를 보았을 것이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주로 배너광고를 이용하는데, 배너광고는 사이트에 네모난 모양의 박스 형태로 게재되며 노출 위치, 크기 등에 따라 그 비용이 책정된다. 이러한 배너광고는 직접 계약하는 방식과 구글 애드와 같은 방식의 애드 네트워크(Ad network)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집적 계약 방식은 광고주가 사이트를 소유한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이며, 이는 사이트의 일정한 규격 안에 광고주가 제공한 내용을 담아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방식이다.<sup>5)</sup> 애드 네트워크 방식은 사이트 네트워킹을 통해 이용자의 사이트 이용 행태에 기반하여 광고를 취합해서 노출시키는 방식을 말한다.<sup>6)</sup>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게재가 심각한 이유는 도박 광고, 음란물 사이트 광고, 불법 의약품 판매와 같은 불법적인 광고나 광고 내용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불법 광고의 게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의 제품 광고, 업체 광고, 게임 광고 등 합법적인 광고까지 불법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함께 게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합법적으로 제작된 광고가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 ●●● [그림] 불법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이미지



그렇다면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광고 게재를 통한 수익이 얼마나 되기에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까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일까.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국민체육진흥법(도박 광고), 저작권법(웹툰 불법 유포)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sup>7)</sup> 검거된 A씨 등은 다수의 불법 성인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 광고, 성매매 업소 사이트 등을 광고해 역대 부당이익을 취하였으며, 사이트 이용자의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웹툰 사이트 6개를 운영하여 웹툰과 영상 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저작물만 8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일 접속량은 5~6만 건, 월평균 150만 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40대 B씨가 경남지방경찰청의 수사로 구속되었으며, 500여 건의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재해 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주요 수입원은 불법으로 운영 중인 사이트 페이지에 걸린 ‘배너 광고’, ‘팝업 광고’다. 광고주들은 이들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비용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페이지에 10 건의 광고를 게재하기만 해도 매월 수 천만 원의 수익을 배너 광고로만 벌어들이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역시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이트에 게재된 배너광고가 그 수익을 차지

5) Eun-ha Park and Jae-Hwi Kim, Advertising Psychology, communicationbooks, 2009.  
 6) Woon-Han Kim, Hyun-Joong Ryu, and Won-Bae Ji, “The Impact of Attention and Content Involvement toward Network Advertisement on Perceived Intrusiveness and Ad Attitud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0, No. 2, pp.377-385, 2019.  
 7)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성매매·도박 광고해 역대 수익...일당 검거. (경기신문, 2021.07.08. 김기현 기자)

하고 있다. 배너광고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비용이 저렴하여 온라인 광고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중인 사이트 내 광고를 게재할 광고주를 모집하며, 대부분의 광고는 성인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와 같은 불법적이고 해로운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는 정당한 광고 시장의 거래 질서를 무너트리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의 수익원으로 저작권자의 이익 등 법적 보호를 침해하게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III. 불법 사이트 광고 현황

#### 1.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현황

보호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접속 차단<sup>8)</sup>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 113건<sup>9)</sup>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게재 현황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는 총 8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유형,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유형<sup>10)</sup>, 광고 게재 수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방심위를 통해 접속 차단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 113건 중 대체사이트가 생성되어 다시 접속 가능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만화·웹툰 사이트 총 27건,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총 23건, 토렌트 사이트 총 18건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총 68건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유형별 불법 사이트 운영 현황

구분(사이트 유형)	만화·웹툰	스트리밍 링크	토렌트	합계
사이트 수	27	23	18	68
비율	40%	34%	26%	100%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총 113건 사이트 중 현재 접속 가능한 68건 사이트 기준, 방심위 접속 차단으로 폐쇄된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 생성 주기는 평균 2.7일로 나타났다.

●●● [표] 불법 사이트별 대체 사이트 생성 주기

구분	만화·웹툰	스트리밍 링크	토렌트	총 변경 주기
대체 사이트 생성 주기(평균)	3일	3일	2일	2.7일

#### 2. 사이트 유형별 광고 게재 현황

총 68건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내 광고 게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641건의 광고가 사이트 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광고 유형은 성인·도박 광고가 총 4,799건, 구글 애드, 게임광고 등이 총 842건으로 성인·도박 광고 유형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도박 광고가 가장 많이 게재된 사이트 유형은 만화·웹툰 사이트로 총 2,558건의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스트리밍 링크 사이

8) 대한민국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  
 9)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차단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113건  
 10) 광고 유형: 직접광고(성인·도박), 대행 광고(구글광고, 일반광고, 게임광고 등)

트 총 1,288건, 토렌트는 95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글 애드, 게임광고 등이 가장 많이 게재된 사이트 유형은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로 총 737건의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만화·웹툰 사이트가 총 56건, 토렌트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 3. 사이트 유형별 광고 게재 방식

현재 운영 중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총 68건의 광고 게재 방식을 기준으로,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광고주를 모집하여 배너광고를 배정, 해당 광고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게 해주는 광고 형태의 직접 광고는 총 50건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주가 전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광고하는 형태의 대행광고는 총 18건으로 나타났다.

●●● [표] 사이트 유형별 광고 게재 방식

구분	직접광고	대행광고	합계
사이트 수	50	18	68
비율	74%	26%	100%

### 4. 사이트 유형별 광고 게재 유형

현재 운영 중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총 68건 사이트 내 광고 유형별 게재수를 확인한 결과 직접광고 수는 총 4,799건, 대행광고 수는 총 842건으로 나타났으며, 직접광고가 전체 광고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 광고는 모두 성인·도박 광고로 만화·웹툰 사이트에서 총 2,588건이 게재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총 1,288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토렌트 사이트는 총 953건의 광고가 게재되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행광고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직접광고와 달리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에서 총 737건의 광고가 게재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직접광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만화·웹툰 사이트는 총 56건으로 확인되었다. 토렌트는 총 49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행광고의 세부 유형은 구글 광고가 총 70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반광고가 총 72건, 웹툰광고가 총 55건, 게임광고가 총 9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 [표] 사이트 유형별 합·불법 광고 게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직접광고(불법)	대행광고(합법)					총합 (비중)
	성인·도박	구글광고	일반광고	웹툰광고	게임광고	소계	
만화·웹툰	2,558	10	-	39	7	56	2,614 (46.3%)
스트리밍 링크	1,288	683개	36	16	2	737	2,025 (35.9%)
토렌트	953	13	36	-	-	49	1,002 (17.8%)
합계	4,799	706	72	55	9	842	5,641
비율	85.1%	12.5%	1.3%	1.0%	0.2%	15%	100.0%

## IV. 불법 사이트 광고차단

### 1. 국내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광고차단 현황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복제 및 전송, 게시판 운영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sup>11)</sup>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다. 이처럼 해외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개설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의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사이트와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방심위를 거쳐 국내에 유입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URL을 차단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대체하는 우회 사이트가 생성되어 접속차단 대응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보호원은 불법 사이트 운영의 동력이 되는 광고 수익 등에 대한 차단을 2015년을 시작으로 온라인 광고업체에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목록을 전달하여 광고주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 내 광고 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 중에 있다.

●●● [표] 국내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광고차단 현황

구 분	대상 사이트	차단요청 광고수	차단		차단율
			사이트	광고 수	
2019년	48	2,153	21	274	12%
2020년	54	1,504	25	289	19%
2021년	94	832	29	294	35%

### 2. 해외 불법 광고 대응 사례

해외에서도 불법 사이트의 광고 차단 사례<sup>12)</sup>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영국의 경우 런던시 경찰청 소속 지식재산범죄 전담 부서인 PIPCU(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지적 재산권 범죄를 조사·예방하는 일과 더불어 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PIPCU는 창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자금 조달 제재를 위해 창조 작전(Operation Creative)과 침해 웹사이트 목록인 IWL(the Infringing Website List: 이하 IWL)을 만들었다. 런던시 경찰청은 영국 광고업계 및 저작권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창조 작전을 단계적으로 운영하였다. 먼저 권리 소유자 혹은 대행자가 침해 사이트를 식별해 PIPCU에 보고하면서 해당 사이트가 어떻게 불법적인 침해 행위에 관여하는지 상세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PIPCU는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분류되면 사이트 소유자가 침해 행위를 교정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지속해서 침해할 경우, 사이트 등록을 해지하거나 기존 광고를 교체하고 광고수익 지급을 중단시킨다. 미국은 크리에이티브 퓨처(CreativeFuture)라는 단체 운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퓨처는 22만 명 이상의 저작권자와 50개의 회사 및 기관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영화와 TV, 음악, 사진, 서적 출판 등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퓨처는 저작권 침해

11)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저작권법 제133조의2(시정명령)

12) 신명섭, 옹미란, 이영주,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광고 차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연구 - 자금 추적 기반 방식을 중심으로 p335 - p337 인용

사이트에 광고를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회사에 메시지를 보내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광고주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그라는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 내 광고 게재를 예방하고 있다. 태그는 불법 복제와 사기성 트래픽,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방지하고 디지털 광고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불법 복제 방지 브랜드 무결성 프로그램(the Brand Integrity Program Against Piracy or Anti-Piracy Program)이 있다. 태그는 검증된 기술회사를 디지털 광고 확약제공자(Digital Advertising Assurance Provider, DAAP)로 지정해, 광고주와 파트너사가 불법 사이트를 식별하고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DAAP 검증 과정은 Alliance for Audited Media와 Ernst & Young, BPA Worldwide 등 공인된 독립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형 광고 네트워크 등은 자가 검진을 통해 태그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수 회사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불법 사이트 내 광고 게재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광고 배치 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BRIP 데이터 베이스(the Building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project) 제시하여 대행사가 수집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주소를 올리면, 광고주와 대행사가 데이터베이스를 광고 배치 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V. 맺으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가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료 OTT 플랫폼의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거나, 웹툰, 웹소설 등을 이용하는 이들을 간혹 볼 수 있다.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무수히 뜨는 광고를 하나하나 지워나가며 불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무료로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든다. 또한, 시청 중간마다 뜨는 팝업 형태의 성인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면 괜스레 얼굴이 뜨거워진다. 한번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 교복 입은 학생들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불법 광고로 인한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다는 생각을 들었다. 한 학생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통해 광고된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전적 수익을 내었는데 이를 다른 학생에게 권장하는 내용의 대화였다. 최근 청소년들의 사행성 도박 사이트 이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보니 정말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러한 불법 도박 광고를 통해 접속한 도박 사이트 대부분은 성인 인증 절차가 없으며, 간단한 게임의 형태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도박을 할 수 있어 도박의 위험성을 알기도 전에 중독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도박뿐만 아니라 성인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내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는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창 올바르게 자라나고 좋은 것만 경험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 청소년뿐이겠는가 성인 역시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성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인 영상물 노출을 통한 그릇된 디지털 성범죄 문제 등 그 피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방면에서 확산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운영자를 구속하여 사이트를 폐쇄 중이나, 곧 유사 사이트나 대체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차단이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 수익원이 되는 광고의 공급 및 게재를 차단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운영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기획·집필 | 온라인보호부 김찬솔 과장  
조사·통계 | 윤영석 선임, 신하은 주임